

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·시행령」

위임 및 조례 제정방향 보고

2015. 6.

서울특별시
(한옥조성과)

I .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

□ 구 성

○ 제8장 제42개조

제1장 총 칙	▶ 3개 조문 : 제1조~제3조 ▶ 목적, 용어의 정의,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
제2장 건축자산 진흥기반 마련	▶ 6개 조문 : 제4조~제9조 ▶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수립,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, 전문인력 양성 및 사업자 지원
제3장 우수건축자산 등록 및 관리	▶ 7개 조문 : 제10조~제16조 ▶ 우수건축자산의 등록, 우수건축자산의 증축·개축 및 철거 등,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법령 특례
제4장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	▶ 7개 조문 : 제17조~제23조 ▶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, 관리계획 수립, 건축물의 관계 법령 특례,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
제5장 한옥의 진흥	▶ 8개 조문 : 제24조~제31조 ▶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, 관계법령 특례, 국가 한옥센터 설치,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, 한옥 관련 산업 지원·육성, 한옥건축양식의 보급 지원
제6장 지역 건축문화의 진흥	▶ 4개 조문 : 제32조~제35조 ▶ 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, 교육 및 홍보 등, 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, 우수사례 발굴·시상
제7장 보 칙	▶ 5개 조문 : 제36조~제40조 ▶ 건축자산특별회계 설치, 권한 위임·위탁
제8장 벌 칙	▶ 2개 조문 : 제41조~제42조 ▶ 벌칙, 과태료

□ 주요내용

-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고, 시장은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·시행(제4조 및 제5조)
- 건축자산의 유지·보수 및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, 관련 사업자 지원을 할 수 있음(제8조 및 제9조)
- 건축자산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·관리하고,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에 대해 지원하거나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을 할 수 있음(제10조 내지 제14조)
- 건축자산이 밀집한 지역 등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,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하여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하여야 함(제17조 내지 제19조)
-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해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, 기반시설 정비 지원, 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 지원,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1조 내지 제23조)
-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지원,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을 할 수 있음(제24조 내지 제26조)
- 국토교통부장관이 한옥의 보전 및 진흥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을 국가한옥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(제28조)
-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, 한옥관련 산업 육성 및 한옥건축양식의 확산 등을 노력하고, 건축자산 및 지역 건축문화 진흥 홍보 및 교육, 관련 민간단체 지원, 우수사례 발굴·시상 등을 할 수 있음(제29조 내지 제35조)
- 건축자산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·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자산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음(제36조)

Ⅱ . 법률 및 시행령의 위임사항

법률

-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비용 지원사항(제12조)
- 우수건축자산 특례적용계획서 포함사항(제14조)
-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 조직·운영 및 업무 등(제23조)
-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주민 지원 기준 및 절차 등(제32조)

시행령

-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(제3조)
-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지원 대상 업종(제6조)
-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을 재 열람·공고하는 중요한 변경사항(제14조)
-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(제17조)
 - 지원 대상
 - 사업비 보조 및 융자
 - 그 밖의 지원 사항

Ⅲ. 조례 제정방향

※ 이 제정방향은 의견조회,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 등 절차 진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□ 추진경과

- '14.06.03 :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정('15.6.4.시행)
- '15.05.28 : 조례 제정 가이드라인 배포(국토교통부→서울시)
- '15.06.01 :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정
- '15.06.11 : 조례 제정 계획 수립

□ 제정방향

-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 제정
- 기존 '한옥밀집지역'이 특별법상 '건축자산진흥구역' 미 의제로 기존 조례와 병행 (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한옥밀집지역을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 완료 시까지)
- 서울시 전체 한옥에 대하여 보조 및 융자 지원
- 현행 한옥 지원과 동일한 기준 적용
- 우수건축자산은 시세감면 조례에 따라 세금감면 실시
- 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 : 건축자산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·활동 지원

□ 향후계획

- '15.06. : 의견조회(관련부서, 자치구)
- '15.07.~08. : 규제심사, 입법예고, 법제심사, 조례·규칙심의회
- '15.11. : 시의회 상정
- '15.12. : 조례 공포·시행